[별표] <개정 2024. 6. 28.>

위 임 사 무 명(제2조 관련)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단위 사무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세정과	1. 도세납세 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		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	읍・면・동
징수과	1. 도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	① 체납액 징수독려 ② 도세의 수납(금융결재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)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6조 「경기도 도세 기본조례」 제2조 제1항 「파주시 시세 기본조례」 제3조	읍・면 읍・면・동
하천관리과	1.「하천법」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	① 양도・양수의 허가 처리	「하천법」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「경기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	읍・면
		② 상속신고의 처리	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	③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・신고의 처리	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	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	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2.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	① 하천 점용허가 중 토지의 점용허가	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	읍・면
	3.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	① 하천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강제 징수	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67조	읍・면
		② 하천 점용료의 감면	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	읍・면
		③ 원상회복명령,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	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4. 제2호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「하천법」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	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	같은 법 제69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	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	같은 법 제69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5. 제2호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강제 징수		같은 법 제67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단위 사무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하천관리과	6.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		같은 법 제75조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7. 하천의 감시	① 하천감시원의 임명(소속 공무원 중 업무관련 담당자 지정)과 그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	같은 법 제72조	읍·면
		②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69조·제93조·제94조·제95조·제96조	읍·면
		③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및 보관·처리	같은 법 제69조	읍·면
도로관리과	1.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	① 토지형질변경 행위	「도로법」 제49조제3항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	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신축,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	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2. 도로환경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	①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	② 도로에 토석, 죽목,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	③ 그 밖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농업정책과	1.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사무 중 다음의 권한	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· 접수	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	읍·면·동(교하동,금촌3동에 한함)
		② 경작실태 조사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③ 지급자격 심사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④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⑤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및 공급	「농지법」 제21조	